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9.16(화) 10:00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박우양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「소비자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(안 제1조, 안 제3조 ~ 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로써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